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1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금주의원 등 19인

나. 발 의 일 : 2024. 7. 12.

다. 회 부 일 : 2024.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 해양 투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농수축산업인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에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제1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 <신설>	○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 -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 (농어업재해대책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제1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기금명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재 원	◦ 정부출연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1호에 따른 재해 및 환경오염에 의한 농어업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 ◦ 재해 관련 분야 증진사업 촉진을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관 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이하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이라 함)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해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 대응 및 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재해의 예방·대비·복구 등을 위한 자금의 확보·공급을 목적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임업 및 농수축산업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폭우, 이상기온, 가축 전염병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는 농작물 작황과 어족자원 변화뿐 아니라 산림생태계와 가축 사육환경의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불안정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농어업재해대책법”이라 함)에 따라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지원이 재해 복구 차원으로 농작물과 임산물 등의 생산 자체의 피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재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과 판매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 피해지원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음.²⁾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여 재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³⁾

따라서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및 어업 분야의 피해 빈도와 강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2) 국회,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2024. 8. 7.

3) 국회,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2024. 8. 7.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 대책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⁴⁾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⁵⁾

이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 4)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5) 다만, 「국가재정법」 제1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회에서 기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음.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동 기금의 재원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⁶⁾ 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전출이 동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재원 및 용도 >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 의료서비스의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정주 여건의 개선,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참고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립 이후 최근까지 조성된 출연현황은 2,401억원임.⁷⁾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7) 2024년 6. 30. 기준

<연도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2024. 6. 30. 기준) >

(단위: 개사, 백만원)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및 단체		합 계
	참여	금액	참여	금액	참여	금액	
2017년	14	30,625	2	301	68	39	30,965
2018년	30	17,930	9	5,215	27	14	23,159
2019년	43	17,543	26	5,045	9	5	22,593
2020년	65	20,435	76	17,053	16	107	37,595
2021년	94	25,739	70	19,684	5	103	45,526
2022년	102	16,398	111	18,792	7	226	35,416
2023년	117	13,387	103	16,941	5	166	30,494
2024년6월	24	4,345	32	5,961	4	3	10,309
다년협약잔여분	2	270	3	3,780	-	-	4,050
총 계	132	146,672 (61.4%)	199	92,772 (38.3%)	130	663 (0.3%)	240,1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동 기금의 재원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의 경우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자 등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 해양환경 개선자금으로 활용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폐기물 해양 배출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위해 동 법에 따라 해양오염을 초래한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친환경적 해양이용사업자 및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은 농어업재해 및 환경오염에 의한 농어업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부과·징수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음.

다만, 개정안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농어업재해대책기금으로 전입할 경우 해양환경의 복원 및 보전관리 등 기존 부담금의 용도에 쓰일 예산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용도 >

부담금의 부과·징수	부담금의 용도
◦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 친환경적 해양이용사업자 및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한 사업 ◦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사업 ◦ 해양환경의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의 지원 등 수산업 지원사업 ◦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24. 8.

다음으로,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입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등에 재원조달을 의존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또한,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재해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에서 재해방지 및 피해지원 등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내 재해대책비, 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어업 분야 관련 재해에 대응하여 지원⁹⁾하고 있어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구체적인 지원 수준 등은 [참고1]부터 [참고3]까지 참조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2024년 예산
농특회계	양식등재해대책비	◦ 이상수온(고수온·저수온), 적조 대응 장비 보급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연구비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 대상으로 복구비 지원	45,400
	수산물융자금 이차보전	◦ 피해 어가에 대해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연기·이자감면 지원	3,301
수발기금	재해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융자 지원	100,000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한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인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기금 수입이 출연금·차입금·전입금 등으로 재원-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곤란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업 분야의 재해 대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기금 신설 필요성이 낮으며, 재해 대응을 위한 별도 기금이 없는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농어업분야에만 별도의 기금을 마련할 타당성은 부족하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한편,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재난피해 발생 시 생계안정·피해복구는 정부가 지원하고, 수확량 감소·손실보상은 재해보험을 통해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농어업 분야에 대한 별도 기금 마련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또한 해양수산부는 高수온 등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현행 재해복구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어 별도의 기금 설치는 예산 중복성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농어촌재해대책기금법」</u>

문의처
02)6788-5152

참고1

농업재해 복구지원 수준

지원항목	복구비 지원내용	주요 내용			
		국 고	지 방 비	융 자	자 부 담
생계지원	○ 세대원수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70	30		
학자금 면제	○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6개월분 지원	70	30		
농경지 복구	○ 농경지 유실·매몰(평균심도 10cm이상)	42	18	30	10
농림시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	24.5	10.5	55	10
농작물 복구	○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35	15	30	20
	○ 농약대 지원	70	30		
축사파손·유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24.5	10.5	55	10
초지 유실·매몰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	70	30
잠실 파손·유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24.5	10.5	55	10
가축입식	○ 피해 가축의 입식비	35	15	30	20
누에유실·폐사	○ 당해연도 사육비	35	15	30	20
농경지 매입	○ 농경지 복구가 비 경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 지원	50	50		
공공시설	○ 방조제, 공공건물, 수리시설	100	—		
	— 국가관리	50	50		
	— 지방관리	70	30		
간접지원	○ 영농·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림축산식품부 별도지원			
가뭄대책	○ 양수 및 급수장비 구입비	50	5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참고2

농업재해대책 및 농업재해보험 제도 비교

회계구분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목적	- 피해농장·시설의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 ⇒ 농작물 피해확산 방지, 생산 재개 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	-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험금으로 보상 ⇒ 농가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자기 책임하에 사전적으로 위험 대비
보조율	- 대파대·가축입식비 50%, 농약대 100% 등 * 단가는 실거래가의 약 50~100% 수준('23: 59.9%)	-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 (농작물) 또는 50%(가축) - 지자체에서 30~40% 지원 - 농가 보험료 부담*은 10~20% * 농작물 12.5%, 가축 36%('23)
지원 대상	- 재해 피해 농가(품목 제한 X) - 농외소득 50% 이상은 복구비 지원 제외 -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대파대·입식비 지원 제외(농약대는 지원)	- 보험 가입 농가(농작물 73종, 가축 16종, '24) * 가입 지역, 품종 등 일부 제한
농가 보상 (농작물)	(금액) 지원단가×피해면적 (시기) 통상 피해 발생 후 1~2개월 내 (절차) 피해 조사(지자체) → 복구비 확정(중앙) → 복구비 지급(중앙→지자체→농가)	① <u>농작물 수확감소보장</u>(36개 품목) (금액) 피해액(수확량감소분×가격) - 자기부담금(보험가입금액×자기부담비율) (시기) 품목별 수확기이후 (절차) 피해 조사(손해평가인력) → 보험금 산정 및 지급(보험사) ② <u>농작물 생산비보장</u>(37개 품목) (금액) 피해면적 × 단위면적 당 생산비 × 경과비율 × 피해율 (시기)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시마다 * 배추 등 일부 품목 제외 (절차) 피해 조사(손해평가인력) → 보험금 산정 및 지급(보험사)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14.)

참고3

농업업재해보험 관련

□ 농어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시행령 별표 1)

재해보험의 종류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1. 농작물·임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2. 가축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

□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농식품부 고시 별표 1)

보험 종류	보험 목적물	구분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비고
농작물 재해보험	벼	병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충해	벼멸구, 먹노린재	
	감자	병충해	감자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병·해충	
	고추	병충해	고추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병·해충	
	복숭아	병해	세균구멍병	
가축 재해보험	소·사슴·양 및 말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질병에는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등)·난산·산욕마비(말의 경우 산통 포함), 씨수말 번식 첫해 선천성불임, 정액생산용수소의 정액생산능력저하로 인하여 폐사 또는 즉시 도살하는 경우 등도 포함)
	돼지	질병	TGE, PED, Rota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꿀벌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단, 부저병 및 낭충봉아부패병은 보상하는 재해 포함)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 보장방식에 따른 재해보험 가입 품목

구분		품목	품목수
수확량 보장방식 (36)	과수	사과, 배, 단감, 뽕은감, 감귤, 복분자, 오디, 무화과, 참다래, 매실, 자두, 포도, 복숭아, 유자, 살구, 밤, 대추, 오미자, 호두, 블루베리	20
	논밭작물	벼, 밀, 고구마, 옥수수, 콩, 차, 양파, 감자, 마늘, 양배추, 팔, 보리, 귀리, 수박, 두릅	15
	기타	인삼	1
생산비 보장방식 (37)	논밭작물	고추, 배추, 무, 파, 단호박, 당근, 시금치, 메밀, 브로콜리, 양상추	10
	시설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4
	시설작물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수박,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숙갓, 봄감자	23
총 계			7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14.)

□ 최근 10년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현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6.1	21.5	27.4	29.7	32.9	38.8	45.0	49.4	49.9	52.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14.)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비율 현황(2023년 기준)

보험료지원			자부담
정부	지자체	합계	
50%	34~45%	86~95%	5~16% (평균 12.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14.)

□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비율 현황(2023년 기준)

보험료지원			자부담
정부	지자체	합계	
50%	0~50%	50~100%	0~50% (평균21.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14.)